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0월 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10월 14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0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과장)

가. 제안이유

- 관내 10년 이상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특별회계를 설치한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설치·운용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욱)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붙임 1]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4. 10. 2.
- 회부일자 : 2024. 10. 14.
- 상정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관내 10년 이상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특별회계를 설치한 실적이 없고 향후에도 설치·운용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1조에서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제28조에서는 지자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10년 이상 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지 않음.

나. 입법의 취지

- 제도적 여건 등의 변화로 조례 운영 실적이 없고 향후 계획도 부재하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려 하는 것임.

5. 종합검토의견

- 10년 이상 미집행 군 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관리를 위해 2005년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시설 매수 청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조례 운영 실적이 없고 향후 계획도 부재하여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5.10.07 조례 제1777호

(일부개정) 2016.02.19 조례 제2205호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274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용자금
4. 차입금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45
----------	-----

제출년월일 : 2024.10.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평창군 내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한 실적 없이, 향후에도 설치·운용할 계획이 없음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폐지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8. 8. ~ 8. 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161호, 도시과-4984(2024. 8. 8.)호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2299(2024. 8. 6.)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예산과-2299(2024. 8. 6.)호]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4083(2024. 9. 6.)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4934(2024. 9. 26.)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도시과장 이정의
연락처	(033) 330 - 2470